

의안 번호	2039	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2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16.(금)

2. 제안이유

-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기급계획변경사항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1년도 조성액(A)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말 조성액(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1,000,000	7,001,315	1,001,315*	6,000,000	7,000,000

*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 상환한 예수금 원리금임

나. 수입계획

-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: 0원 → 7,000,000천원

다. 지출계획

- 구금고 정기예금 예치금 : 0원 → 7,000,000천원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기금 계획변경사항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